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공 公 보

제 617 호

2008년 1월 16일 수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2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1호선)
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2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3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확정결과 고시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3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53호선)
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10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19호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
서명인수 공표 17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0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
주민수공고 19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1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20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1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입법예고 23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
관리에 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 30
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2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1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소로1류1호선, 사업명:승학길 도로정비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6) 및 건설과(560-452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8. 1. 14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변경사유 : 지적 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
2. 사업시행지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13-2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소로1류1호선)
 - 【명칭】 승학길 도로정비공사
4. 사업의 규모(변경없음) : L = 80m, B = 12m ~ 13m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없음) : 2007. 11월 ~ 2008. 12. 31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변경) : 불임과 같음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(변경) : 불임과 같음
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) : 불임과 같음

용 지 조 서(변경)

구분	번호	동 명	지 번	지목	토 지	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고
					공 부 면적(㎡)	편 입 면적(㎡)	주 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내용	
당초	①	연희동	114-7	도	1	1	인천시					
당초	②	연희동	213-2	도	235	175	건설교통부	국				
변경	②	연희동	213-19	도	175	175	건설교통부	국				
당초	③	연희동	213-3	답	2	2	인천시					
당초	④	연희동	213-5	전	978	70	마전동경단2지구 22BL 1LT외10 경단아이파크@ 103동 302호	인희영	서인천 농업협동조합 (서곶,율도지점)		근저당 지상권	
변경	④	연희동	213-20	전	66	66	마전동경단2지구 22BL 1LT외10 경단아이파크@ 103동 302호	인희영	서인천 농업협동조합 (서곶,율도지점)		근저당 지상권	
당초	⑤	연희동	213-9	도	33	33	인천시					
당초	⑥	연희동	213-11	도	130	96	인천시					
변경	⑥	연희동	213-11	도	95	95	인천시					
당초	⑦	연희동	213-12	도	144	118	인천시					
변경	⑦	연희동	213-22	도	118	118	인천시					
당초	⑧	연희동	213-18	도	83	83	인천시					
당초	⑨	연희동	215-2	도	278	278	건설교통부	국				
당초	⑩	연희동	215-9	도	160	160	서구 연희동235	정홍구				
당초	⑪	연희동	215-16	도	125	125	인천시					
당초	⑫	연희동	556-2	도	1,511	73	건설교통부	국				
변경	⑫	연희동	556-4	도	14	14	건설교통부	국				
변경	⑬	연희동	556-6	도	56	56	건설교통부	국				
계	변경 전					1,214						
	변경 후					1,206						

지 장 물 조 서(변경없음)

연 번	소재지 지 번	물 건 종 류	구조 및 규 격	총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실 제 이 용 현 황	토지 소유자		물건 소유자 관계인			비 고
	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권리 내용	
①	연희동 215-9	회양목	H=0.5m		약58㎡	묘목밭	서구 연희동235	정홍구	서구 연희동235	정홍구		
②	연희동 215-2	전 주			1 본	도로	국(건설교통부)					
③	연희동 556-2	전 주			1 본	도로	국(건설교통부)					
④	연희동 749	전 주			1 본	도로	인천시					
⑤	연희동 215-2	채신전 주			1 본	도로	국(건설교통부)					
계					약 58㎡ 전 주 3본 채신주1본							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3호

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확정결과 고시

2007년 12월 11일 제145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(정례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,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8년 1월 8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I. 재정운영 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

재정운영 여건

① 국가재정여건

☐ 2008년도 우리경제는 5%정도의 실질적인 성장 예상

- 내수 회복세 지속, 안정적인 수출 증가 추세
-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

☐ 세입의 증폭은 크지 않으나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

- 사회 양극화 추세에 대비한 사회 안정망 구축
- 저출산 고령화, 에너지대책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과제 준비
- 국민생활 안정, 국방개혁 등을 위한 재정소요 꾸준한 증가

② 우리구 재정여건

☐ 세입의 의존재원의 증가로 다소 증가 전망

- 자체재원 : '07년 보다 소폭 상승 예상

- 지방세는 검단지역 아파트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5.2% 증가가 예상되고,
-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, 도로점용료 증가 등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28.8% 증가가 예상됨
- 의존재원 : '07년 보다 다소 증가 예상
 - 조정교부금은 구월, 논현, 검단지구 등 아파트 입주에 따른시세(취득세, 등록세) 증가로 다소 증가 전망
 -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및 녹지분야 보조금 지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예상

□ 세출수요는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한 수요와 사회복지 지원 확대에 크게 증가할 전망

- 필수경비 증액 불가피
 -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, 공무원 및 의원 보수인상,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비 증가,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
-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투자수요 증대
 - 국민체육센터, 가좌동노인문화센터, 석남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증가, 가좌시설녹지, 석남시설녹지, 원신근린공원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과, 이에 따른 지방채 채무 부담액 증가
 - 구획정리지구의 도로개설사업,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, 검단3동사무소 신축 등 지역경제 성장 지원 및 지역개발 SOC 사업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재정운영 기본방향

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

-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채무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
-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국가계획 및 인천광역시 계획과 상호 연계 운영
-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

②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

-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용 성과관리 강화
-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활용
- 사업예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실 운영으로 효율적 관리 체제 확립

③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 적정사용

-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부분간·지역간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발전 추구
- 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
④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

- 바람직한 지역혁신 비전을 개발하여 주민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변화관리 강화
- 복지수준의 향상, 정보화, 글로벌화 등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배양

⑤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

-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 운용
-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확대
-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

⑥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

- 재정운용 상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공시
- 재정운용 전 단계의 적극적 주민참여활성화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통합적 운영, 공표로 효율적 재정 운영

Ⅱ.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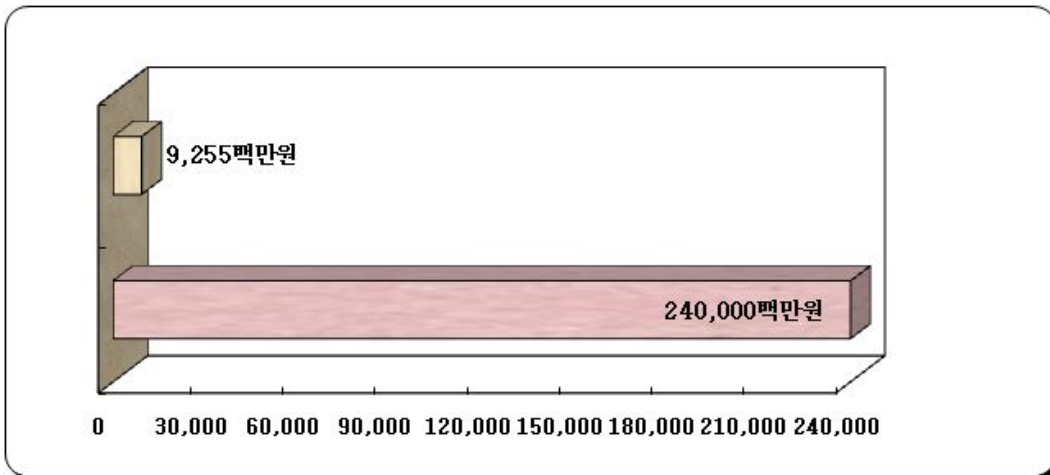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경비별	2008년 당초예산	%	2007년 당초예산	증감액	%	주요증감사유
합 계		240,000	100.0	200,924	39,076	19.4	
세입	지 방 세	45,127	18.8	39,162	5,965	15.2	-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증가
	세 외 수 입	35,136	14.6	27,272	7,864	28.8	- 순세계잉여금 증가
	조정교부금	44,783	18.7	44,700	83	0.2	- 시세증가로 재원 조정 교부금 증액
	보 조 금	103,728	43.2	82,458	21,270	25.8	
	국 비	55,145	22.3	45,187	9,958	22.0	- 복지분야 예산 증액
	시 비	48,583	20.2	37,271	11,312	30.3	- 시설녹지(석남·가좌) 관련 보조금 증액
	지 방 채	11,225	4.7	7,332	3,893	53.1	- 시설녹지(석남·가좌) 사업비 증가
세출	인 건 비	39,381	16.4	37,828	1,553	4.1	-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상승
	보 조 사 업	15,787	6.6	15,832	△45	△0.3	- 시책업무추진비 감소
	경 상 이 전	116,679	48.6	100,110	16,569	49.3	- 복지분야 예산 증가
	자 본 지 출	63,444	26.4	44,059	19,385	44.0	- 녹지분야 사업비 증가
	내 부 거 래	1,333	0.6	488	845	173.2	- 기금전출금 증가
	예비비기타	3,376	1.4	2,607	769	29.5	- 예산규모 증가로 예비비 증가

□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	2008년 당초예산	2007년 당초예산	증 감	%	비 고
합	계	249,255	212,166	37,089	17.5	
일	반 회 계	249,255	200,925	39,075	19.4	
특	별 회 계	9,255	11,241	△1,836	△16.3	
	발전소주변지역지원	4,392	1,326	3,066	231.2	
	의 료 보 호 기 금	344	188	156	83.0	
	기 반 시 설	339	0	339	100.0	
	주 차 장	3,126	2,927	199	6.8	
	검 암 1 지 구	261	3,373	△3,112	△92.3	
	검 암 2 지 구	630	121	509	420.7	
	경 서 지 구	163	3,156	△2,993	△94.8	



Ⅲ.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인구수(A)	지방세(B)	1인당 부담액 (B/A)	비고
399,430	45,127,052	112	

IV. 채무관리계획

☐ 채무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7.12.31 현재차입액	년도별상환계획				
	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이후
계	30,892			3	12	30,877
일반회계	30,892					
지역개발기금차입	25,099			3	12	25,084
청사정비기금차입						
지방채인수재특자금						
공공자금관리기금	5,793					5,793
특 별 회 계						
지역개발기금운영						

※ 채무현황은 원금기준임

☐ 채무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 채 선	발 행 액	발 행 조 건	
			이율	상환기간
가좌시설복지조성	공공자금관리기금(재경부)	3,800	5.2%	5년거치 10년 상환
석남시설복지조성	공공자금관리기금(재경부)	6,600	5.2%	5년거치 10년 상환

IV. 채무관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	전년도이월액 (A)	당해년도운용계획			당 해 연도말 현재액 (A+D)
			수입액 (B)	지출액 (C)	증감 D=(B-C)	
계		8,186	1,818	2,248	△429	7,757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	632	232	32	200	833
도 시 가 스 사 업 기 금		626	24	3	21	647
재 난 관 리 기 금		3,392	449	1,954	△1,505	1,886
사 회 복 지 기 금	소 계	2,173	959	93	866	3,039
	사 회 복 지 분 야	125	6	-	6	131
	기 초 생 활 보 장 분 야	215	111	-	111	326
	저소득주민장학금분야	258	763	-	763	1,021
	노 인 복 지 분 야	,575	78	93	△15	1,600
문 화 원 육 성 기 금		800	34	34	0	800
식 품 진 흥 기 금		563	120	131	△11	552

공	고
---	---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3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53호선) 실시계획인가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중로1류53호선, 사업명: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6) 및 건설과(560-4525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. 1. 2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-3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중로1류53호선)
 - 【명칭】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의 규모 : L = 525m, B = 20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08. 1월 ~ 2008. 12. 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불임과 같음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불임과 같음
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불임과 같음
9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
용 지 조 서

서구 원창동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지적면적(M ²)	편입면적(M ²)			전여면적	토지소유자			관계자		비고
					계	도로내	도로외		소유자	주소	성명	주소	관리내용	
1	원창동	31-2	도	925.0	28.0	28.0		897.0	국	인천광역시				
2	원창동	31-5	임	149.0	94.0	94.0		55.0	국	산림청				
3	원창동	31-7	도	463.0	179.0	176.0	3.0	284.0	국	건설교통부				
4	원창동	132-21	도	262.0	262.0			-	국	인천광역시				
5	원창동	132-22	임	72.0	3.0	3.0		69.0	박학원	남구 확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				
6	원창동	132-29	임	10.0	10.0	3.0	7.0	-	국	인천광역시 서구				
7	원창동	132-6	도	28.0	12.0	4.0	8.0	16.0	박학원	남구 확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				
8	원창동	132-23	도	12.0	12.0	12.0		-	국	인천광역시				
9	원창동	132-3	임	125.0	40.0	40.0		85.0	기진산업 주식회사	남동구 고잔동 726-7	주식회사 하나은행	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-1(남동공단지 점)	근저당	
10	원창동	205-1	도	945.0	239.0	228.0	11.0	706.0	국	건설교통부				
11	원창동	129-12	전	52.0	45.0	8.0	37.0	7.0	정의태	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-57				
12	원창동	129-11	도	337.0	47.0	19.0	28.0	290.0	국	인천광역시 서구				
13	원창동	129	도	60.0	60.0	59.0	1.0	-	박지원	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 7동 206호				
14	원창동	129-6	전	117.0	60.0	5.0	55.0	57.0	박학원 외1인	남구 확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				
15	원창동	132-1	대	491.0	68.0	10.0	58.0	423.0	임순학	서울 은평구 신사동 28-7				
16	원창동	132-26	대	474.0	474.0	474.0		-	임순학	서울 은평구 신사동 28-7				
17	원창동	132-5	도	66.0	66.0	66.0		-	박지원	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 7동 206호				
18	원창동	132-7	도	7.0	7.0	7.0		-	박운환	132-1				
19	원창동	132-20	전	869.0	507.0	470.0	37.0	362.0	임순학	서울 은평구 신사동 28-7				
20	원창동	129-7	대	714.0	25.0	12.0	13.0	689.0	박건준	남동구 민수동 924-1	인천세무서			
21	원창동	129-3	도	22.0	22.0	22.0		-	박웅섭 외1인	132-1	인천세무서		인류	

용 지 조 서

서구 원창동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전여면적	토지소유자			관계자		비고
					계	도로내	도로외		소유자	주소	성명	주소	관리내용	
22	원창동	129-9	도	4.0	4.0	4.0		-	박용섭 외1인	132-1				
23	원창동	160-1	도	2,552.0	4.0	4.0		2,548.0	국	인천광역시 서구				
24	원창동	132-17	전	512.0	6.0		6.0	506.0	임순학	서울 은평구 신사동 28-7				
25	원창동	131-2	도	11.0	11.0	11.0		-	최용복	석남동 353-4				
26	원창동	131-4	도	2.0	2.0	2.0		-	국	인천광역시 서구				
27	원창동	132-18	전	827.0	253.0	193.0	60.0	574.0	임순학	서울 은평구 신사동 28-7				
28	원창동	132-24	전	223.0	35.0		35.0	188.0	이정웅 외1인	인천 서구 신현동 200-6 원흥아파트 1동708호				
29	원창동	131-1	대	648.0	634.0	548.0	86.0	14.0	최용복	석남동 353-4				
30	원창동	130-1	전	544.0	465.0	352.0	113.0	79.0	최용복	석남동 353-4				
31	원창동	130-3	전	332.0	195.0	103.0	92.0	137.0	도산기	130-3	인천광역시 서구		임류	
32	원창동	154-4	대	388.0	234.0	135.0	99.0	154.0	김갑수	155				
33	원창동	154-1	전	220.0	104.0	8.0	96.0	116.0	정덕영	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	서인천농업협동조합	인천 서구 가정동 482-4	지상권, 근저당	
34	원창동	154-8	전	263.0	263.0	263.0		-	정덕영	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	서인천농업협동조합	인천 서구 가정동 482-5	지상권, 근저당	
35	원창동	154-2	전	60.0	60.0	60.0		-	정덕영	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	서인천농업협동조합	인천 서구 가정동 482-6	지상권, 근저당	
36	원창동	154-3	대	304.0	282.0	230.0	52.0	22.0	김명숙	155	근해안강광수산임협동조합 정도강	월시 강서구 화곡동 1105-4(구월동)남지점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-21	지상권, 근저당	
37	원창동	154-5	전	243.0	17.0		17.0	226.0	김찬식	154				
38	원창동	155-1	대	512.0	440.0	367.0	73.0	72.0	김명숙	155	근해안강광수산임협동조합 정도강	월시 강서구 화곡동 1105-4(구월동)남지점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-21	지상권, 근저당	
39	원창동	153-3	전	1,025.0	90.0	60.0	30.0	935.0	서정안	서울 강북 미아 1354 벽산라이브파크 아파트 108-1201				
40	원창동	산46-1	임	595.0	29.0	6.0	23.0	566.0	인회석 외1인	동구 송림동 30	인천광역시 서구		인용재 지분압 류	
41	원창동	152-14	전	1,217.0	600.0	452.0	148.0	617.0	최용복	152				
42	원창동	152-11	전	3,494.0	669.0	470.0	199.0	2,823.0	김생곤	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빌스빌아파트 114-302	인천광역시 서구 계양새마을금고	인천 계양구 차진동 206	임류 근저당, 지상권	

용 지 조 서

서구 원창동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전여면적	토지소유자			관계자		비고
					계	도로내	도로외		소유자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43	원창동	산46-3	임	298.0	2.0		2.0	296.0	박석희	인천 부평구 길전동 351-3 우남빌라 106	함창농업협동조합	상주시 함창읍 구항리 142-4	근저당	
44	원창동	산45	임	8,926.0	2,422.0	1,683.0	739.0	6,504.0	정영삼	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-2 트라움아파트 2-302	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8	기업류	
45	원창동	152-2	전	1,088.0	635.0	504.0	131.0	453.0	장길수	동구 송림동 58-48				
46	원창동	152-8	전	1,792.0	934.0	726.0	208.0	858.0	심경설	백석동 6	서인천농업협동조합(검암지점)	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-4	근저당, 지상권	
47	원창동	산44	임	893.0	25.0		25.0	868.0	장길수	석남동 364				
48	원창동	152-7	전	3,501.0	809.0	717.0	92.0	2,692.0	정영삼	서울서초구 서초동 1495-2 트라움아파트 2-302	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8	기업류	
49	원창동	150-1	전	2,724.0	564.0	416.0	148.0	2,160.0	김정숙	석남동 353-4				
50	원창동	144	전	2,073.0	40.0	29.0	11.0	2,033.0	최기환	신원동 278	서인천농업협동조합(월도지점)	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-4	근저당	
51	원창동	143-2	전	820.0	557.0	433.0	124.0	263.0	김응운	152-18				
52	원창동	408	전	10,244.7	1,310.0	1,029.0	281.0	8,934.7	농어촌 진흥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합계				52,535.7	13,955.0	10,804.0	3,151.0	38,580.7						

지 장 물 조 서

조서 번호	지번	종류	구조및 규 격	수량		단위	소유자			비고
				전체	편입		성명	주소 및 전화번호	권리내용	
1	129-12	버스정류장	철재	1	1	식	-	-	-	
2	132-26	콘테이너	5.0x2.1	1	1	EA	황성축산	033)343-1324		
3	132-26	가옥	블록,슬라브	57.8	57.8	m2	유영환	573-0619	세입자	
		가옥	조립식	17.8	17.8	m2	"	"	"	
		가옥	블록,기와	57.1	57.1	m2	이춘례	574-0874	주	
		가옥	블록,스레트	36.2	36.2	m2	"	"	"	
		자판기	철재	1	1	EA	"	"	"	
4	132-26	가옥	블록,스레트	56.8	56.8	m2	이기원	-	주	
		가옥	스레트(지붕)	13.7	13.7	m2	"	"	"	
		간이화장실	1.2x1.2	1	1	EA	"	"	"	
5	132-1	가옥(공장)	조립식	369.8	37.0	m2	박귀용	011-309-0286	주	
		계단	철재	1	1	식	"	"	"	
		간이화장실	1.2x1.2	1	1	EA	"	"	"	
		화단		1	1	식	"	"	"	
		계근대		1	1	식	"	"	"	
		크레인		1	1	식	"	"	"	
6	129-6	가옥	블록,스레트	49.4	48.5	m2	-	-	-	
		담장	함석(h=2.5)	12.0	12.0	m	"	"	"	
		담장	목조(h=1.8)	4.6	4.6	m	"	"	"	
7	129-7	콘테이너	2.5x7.0	1	1	EA	윤상덕	576-5066	주	
		문주	0.5x0.5	2	2	EA	"	"	"	
		담장	블록(h=2.5)	24.0	17.5	m	"	"	"	
8	132-20	콘테이너	3.0x6.0	1	1	EA	문태영	572-2753	주	
		담장	함석(h=2.1)	94.0	57.0	m	"	"	"	
9	131-1	가옥	블록,스레트	165.3	165.3	m2	최인도	-	주	
		가옥	콘크리트바닥	38.5	38.5	m2	"	"	"	
		담장	블록(h=2.0)	3.8	3.8	m	"	"	"	
		수목		17	17	주	"	"	"	

조서 번호	지번	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		단위	소유자			비고
				전체	편입		성명	주소 및 전화번호	권리내용	
10	130-1	가옥	블록,스레트	50.5	50.5	m2	이춘호	011-729-4825	주	
		가옥	함석,스레트	10.4	10.4	m2	"	"	"	
		가옥	철조망,스레트	19.0	19.0	m2	"	"	"	
		담장	블록(h=1.1)	18.0	18.0	m	"	"	"	
		담장	함석(h=2.0)	37.0	37.0	m	"	"	"	
		냉동고	철재	5	5	식	"	"	"	
		콘테이너	7.4x3.0	1	1	EA	"	"	"	
		콘테이너	2.2x2.1	1	1	EA	"	"	"	
11	130-3	가옥	블록,스레트	99	25.5	m2	도선기	-	주	
		가옥	블록,기와	60.7	21.4	m2	"	"	"	
		담장	블록(h=2.0)	30.0	4.0	m	"	"	"	
		가옥	블록,스레트	176.2	145.4	m2	김복현	세진전기(584-7947)	세입자	
12	154-4	가옥	블록,스레트	159.0	58.1	m2	김갑수	572-6025	주	
		가옥	콘크리트바닥	88.4	44.0	m2	"	"	"	
		담장	블록(h=1.8)	18.0	1.0	m	"	"	"	
		문주	0.5x0.5	2	0	EA	"	"	"	
		가옥	블록,스레트	136.2	134.0	m2	이옥순	578-9288	세입자	
13	154-8	가옥	블록,스레트	235.0	235.0	m2	한택수	-	주	
14	154-5	담장	블록(h=2.0)	29.0	7.0	m	김천식	010-4747-0648	주	
15	155-1	가옥	블록,스레트	118.4	118.4	m2	김명득	572-5025	주	
		가옥	콘크리트바닥	71.8	32.2	m2	"	"	"	
		담장	블록(h=2.1)	51.0	51.0	m	"	"	"	
		가옥	블록,스레트	37.4	37.4	m2	최천성	575-8109	세입자	
		가옥	목조,스레트	8.1	8.1	m2	"	"	"	
16	153-3	가옥	블록,스레트	98.8	24.7	m2	강후진	577-2326	주	
		가옥	콘크리트바닥	35.9	0.0	m2	"	"	"	
		가옥	목조,스레트	9.2	0.0	m2	"	"	"	
		문주	0.5x0.5	2	2	EA	"	"	"	
		담장	블록(h=2.0)	1.5	0	m	"	"	"	

조서 번호	지번	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		단위	소유자			비고
				전체	편입		성명	주소 및 전화번호	관리내용	
17	152-14	가옥	블록,스레트	32.3	13.2	m2	-	-	-	
		가옥	목조,스레트	4.2	1.2	m2	"	"	"	
		가옥	목조,천막	11.2	11.2	m2	"	"	"	
18	152-11	가옥	블록,스레트	159.9	96.6	m2	임계홍	583-8798	주	
		가옥	목조,스레트	71.9	71.9	m2	"	"	"	
		가옥	목조,천막	8.1	7.5	m2	"	"	"	
		담장	블록(h=1.5)	11.0	11.0	m	"	"	"	
		담장	함석(h=2.5)	180.0	75.0	m	김생곤	서구마전동639	토지주	
		수목	적송(h=10.0)	31	22	주	"	"	"	
19	152-2	가옥(공장)	목조,스레트	608.8	351.7	m2	백승재	승산목재(578-1334)	주	
		기계	제재기	4	4	EA	"	"	"	
20	152-8	담장	함석(h=2.3)	350.0	110.0	m	-	동일폐차(576-6633)	주	
		차량					"	"	"	
21	143-2	가옥	철재,천막	43.3	43.3	m2	-	두웅수지 (016-342-3266)	주	
		컨테이너	6.0x2.4	2	2	EA	"	"	"	
		컨테이너	6.0x3.0	1	1	EA	"	"	"	
		담장	함석(h=2.3)	100.0	65.0	m	"	"	"	
		계근대	철재(6.0x2.5)	1	1	EA	"	"	"	
		파쇄기	철재	1	1	EA	"	"	"	
		압축기	철재	1	1	EA	"	"	"	
22	144	가옥	조립식	1	1	EA	김찬심	남구상사 (011-253-2608)	주	
		컨테이너	6.3x12.0	1	1	EA	"	"	"	
		컨테이너	9.0x3.0	1	1	EA	"	"	"	
		컨테이너	5.5x3.0	1	1	EA	"	"	"	
		컨테이너	6.0x2.4	1	1	EA	"	"	"	
23	408	메쉬웬스	(h=1.8)		55.0	m	농촌 진흥공사	581-4302	주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-19호

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08년 1월 1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<구청장>

(단위:명)

동별	청구권자 총수			서명인수	최 소 서명인수	비 고
	계	19세이상주민	등록 외국인			
계	288,637	288,578	59	43,296		
검암경서동	15,405	15,404	1		2,311	
연희동	34,406	34,403	3		2,887	
가정1동	19,443	19,432	11		2,887	
가정2동	16,460	16,459	1		2,460	
가정3동	9,666	9,666	-		1,450	
신현원창동	14,510	14,508	2		2,177	
석남1동	19,570	19,560	10		2,887	
석남2동	12,605	12,604	1		1,891	
석남3동	14,360	14,360	-		2,154	
가좌1동	11,789	11,782	7		1,769	
가좌2동	15,518	15,517	1		2,328	
가좌3동	17,085	17,081	4		2,563	
가좌4동	9,976	9,976	-		1,497	
검단1동	27,302	27,289	13		2,887	
검단2동	14,303	14,302	1		2,146	
검단3동	13,272	13,272	-		1,991	
검단4동	22,967	22,963	4		2,887	

※ 산정된 서명인 수 43,296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, 6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
<구의원>

(단위:명)

구별	선거구별	읍면동별	청구권자 총수			서명인수	최 소 서명인수
			계	19세이상주민	등록외국인		
서구	가선거구	계	77,844	77,826	18	15,569	
		검단1동	27,302	27,289	13		779
		검단2동	14,303	14,302	1		779
		검단3동	13,272	13,272	-		779
		검단4동	22,967	22,963	4		779
	나선거구	계	49,811	49,807	4	9,962	
		검암경서동	15,405	15,404	1		499
		연희동	34,406	34,403	3		499
	다선거구	계	45,569	45,557	12	9,114	
		가정1동	19,443	19,432	11		456
		가정2동	16,460	16,459	1		456
		가정3동	9,666	9,666	-		456
	라선거구	계	61,045	61,032	13	12,221	
		신현원창동	14,510	14,508	2		611
		석남1동	19,570	19,560	10		611
		석남2동	12,605	12,604	1		611
		석남3동	14,360	14,360	-		611
	마선거구	계	54,368	54,356	12	10,874	
		가좌1동	11,789	11,782	7		544
		가좌2동	15,518	15,517	1		544
		가좌3동	17,085	17,081	4		544
		가좌4동	9,976	9,976	-		544

※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, 각 선거구별 1/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0호

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

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.

2008년 1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(공직선거법 제18조)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.

19세이상의 주민수 ①	19세이상의 주민중 선거권이 없는자 ②	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① - ②	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
289,690명	1,112명	288,578명	5,772명 (1/50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1호

2008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(단위:명)

구 분	총 수	내국인수	외국인수 (영주자격자)	투표청구 주민수 (청구인수비율)	비고
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	283,523	283,464	59	23,627 (1/12)	

※ 내국인 :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
※ 외국인 :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

2008년 1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공고 제2008 - 4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8. 1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·구입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민원인이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배출하는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코자함.

2. 주요내용

-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제도 운영
-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시에는 전자지불증개사업자에게 일 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
-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한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 요청시에는 대금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8. 2. 4.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:404-701 주소: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(심곡동244) FAX:560-434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- 조례(안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☎ 560-4342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- 61호

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 입법 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1월 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서구평생교육조례(안)

2. 제정취지

-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협의회
 -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
 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-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 포함
 -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

○ 평생학습관

- 학습관의 기능

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-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학습동아리 육성·지원
-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학습관의 운영

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

- 운영요원

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이내의 평생교육사 채용

- 수강료의 징수

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"수강료"라 한다) 등을 징수

※ 제정조례(안) 별첨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8. 1. 22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【참조 : 교육지원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 Fax:(032)560-4099】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▷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▷ 기타 참고사항

- 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☎ 032)560-5912 에 문의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
□ 주요골자

○ 목 적

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○ 평생교육협의회

-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
 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-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 포함
-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

○ 평생학습관

- 학습관의 기능
 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 -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- 학습동아리 육성·지원
 -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학습관의 운영

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
- 운영요원

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이내의 평생교육사 채용
- 수강료의 징수

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“수강료”라 한다) 등을 징수

자 치 법 규 제 정 안 요 약 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제 정 이 유	○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주 요 내 용	○ 총13개 조항 - 제1조 : 목적 - 제2조~제5조 :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,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- 제6조~제9조 : 평생학습학습관 설치,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 - 제10조 : 수강료 징수 근거 - 제11조 : 수료자에 대한 대우 - 제12조 : 준용 근거 - 제13조 : 시행규칙 근거
제 정 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 표	“해 당 없 음”
관계법령 발취	“별 지 참 조”
관련사업 계획	“해 당 없 음”
예산수반사항	“해 당 없 음”
기타 참고사항	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,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생교육협의회 기능 등)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.

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, 평생교육전문가, 관할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
제3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 한다

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구청장은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품위손상,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
2.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 한 경우
3. 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 사직한 경우

② 협의회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회의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) 제3조 및 제4조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평생학습관 설치)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·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(이하 “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4.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5. 학습동아리 육성·지원
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운영 등) ① 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. 위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2.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

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」 제5조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

④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요원)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“수강료”라 한다)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,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 의견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(수료자에 대한 대우)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- 6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1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(안)

2. 제정취지

○ 세어도등 도서지역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과 향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따른 식수 부족 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「수도법」 규정에 의거 대체 수 원인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소규모급수시설”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14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. (제2조 용어의 정의)
- 관리자라 함은 해당지역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. (제2조 용어의 정의)
-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신청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다 (제3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)
-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, 개 · 보수,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. (제4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)
- 구청장은 수도법제55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필요한 관리 및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

(제6조 수질검사)

-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 (제7조 점검)
- 구청장은 수질오염,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한다. (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)

※ 제정조례(안) 별첨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.2.5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【참조 : 위생과장,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, Fax:(032)560-4379】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

- 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위생지도팀 【☎ 032)560-4381~6】 에 문의 바랍니다.